

의안 번호	1869	[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2. 3.(금) 박경흠 의원 외 7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7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박경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 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)
- 사업 등,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 ~ 제7조)
- 시행규칙(안 제8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및 평생교육시설에의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
-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어 장애인의 복

지와 사회활동 참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
- 상위법과의 저촉여부,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 내용 전반을 검토한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평생교육법

-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장애인복지법

- 제20조(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·능력·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